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제22조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5
------	-----

2003년 3월 25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나.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다. 상정일자 : 2003년 3월 18일(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제안이유

-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나 현재의 하수도 사용요금은 하수도 총괄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시의 사용요금보다 현저히 낮아 계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요금을 상향조정(평균 22%)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하수도사용요금 효율표 조정(안 별표1)

구분	사 용 요 금		
	사용구분(㎡)	㎡당 단가(원)	
		현행	조정
가 정 용	0~30이하	90	120
	30초과~50이하	240	280
	50초과	400	440

구분 업종	사 용 요 금		
	사용구분(m ³)	m ³ 당 단가(원)	
		현 행	조 정
대중목욕탕용	0~500이하	110	130
	500초과~2000이하	130	160
	2000초과	150	180
업 무 용	0~50이하	150	180
	50초과~300이하	230	270
	300초과	250	300
영 업 용	0~30이하	90	120
	30초과~50이하	240	280
	50초과~100이하	400	440
	100초과~200이하	510	560
	200초과~1000이하	580	640
	1000초과	650	720

3.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안석수)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량 점유율이 낮은 대중 목욕탕용과 업무용은 사용구분에 따른 인상률에 차이가 별로 없으나, 30m³이하 사용 가정용과 영업용에 있어서는 m³당 단가를 현행 90원에서 33.3%를 인상한 120원으로 조정 하려는 것임.
- 전체 하수량 대비 가정용은 67%, 영업용 22%로 하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본수량의 요금의 너무 낮아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30m³이하 가정용, 영 업용에 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안정된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음. 단, 사용구분에 있어 기본수량을 낮게 하고 점차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자원절약 차원에서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하수도사용료는 m³당요금이 164원으로 원가 208원 대비 79%로 연간 486억원의 결손이 발생되고 있으 며, 하수도특별 회계 차입금 상환 3,659억원,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약 5조원, 수질기준을 강화한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의거 2008.1.1부터 적용되는 하수고도처리에 약 5,600억원이 소요되므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